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2517호
- 나. 제 안 자 : 이상욱 의원 외 20명
- 다. 제 안 일 : 2025년 3월 28일
- 라. 회 부 일 : 2025년 4월 02일

2. 제안이유

-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공공기여 시설에 공공산후조리원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 여건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 기존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공익시설 (각종 지원센터, 키즈카페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를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시설 용도를 추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저출산·고령화 대비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 중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 시설’을 추가 신설함 (안 제20조제2항제6호)

- 나. 공공서비스 수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중 ‘공공 지원시설’을 추가 신설함 (안 제20조제2항제7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와 주민 공공복리 증진 요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현행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여 시설 중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 시설(안 제20조 제2항제6호)과 개별 조례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공지원시설(안 제20조제2항제7호)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생략)	제20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 신설 >	6. <u>저출산·고령화대책 지원시설</u>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 조례」제14조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 신설 >	7. <u>공공지원시설</u>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별 조례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나. 검토 내용

“개정 배경”

1) 인구구조 변화(저출산·고령화)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2.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국민의 기대수명이 상승하고 2015년을 기점으로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고령화 및 인구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¹⁾

< 우리나라 고령화 가속화 원인 >

① (초저출생) '15년을 기점으로 초저출생 현상이 급격히 심화

* 합계출산율(명): ('00) 1.48 ('05) 1.09 ('10) 1.23 ('15) 1.24 ('18) 0.98 ('21) 0.81 ('23) 0.72

② (기대수명)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00년 76세→ '23년 83.5세)¹⁾ → '40년에 OECD 국가 중 기대수명 1위 도달 전망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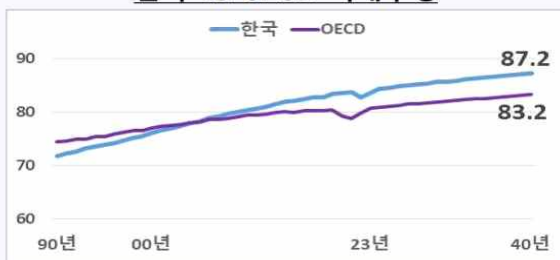
* 1) '00년→'23년 기대수명 변화(세): (韓)7.5 (OECD)3.8 (美)2.5 (日)3.5

2) '40년 기대수명(세) (韓)87.2, (OECD)83.2, (美)81.8, (日)87.1

③ (베이비붐) 거대인구집단(전체 인구의 32.3%)인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 → 다른 국가(일본 단카이세대 3~5년, 미국 10년)에 비해 긴 베이비붐 기간(20년)이 특징

* 1차 베이비붐(55~63년생): 705만명(13.7%) / 2차(64~74년생): 954만명(18.6%)

한국 vs OECD 기대수명



* 자료: 통계청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 자료: 통계청

※ 참조 : 통계청

- 2022년 대비 2052년의 우리나라 시도별 장래인구추계²⁾ 분석 결과를 보면 세종과 경기 지역은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나머지 15개

1) 관계부처 합동, 초고령화 대응방향, 2025.1.23., p.2

2) (보도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 2024.5.28.,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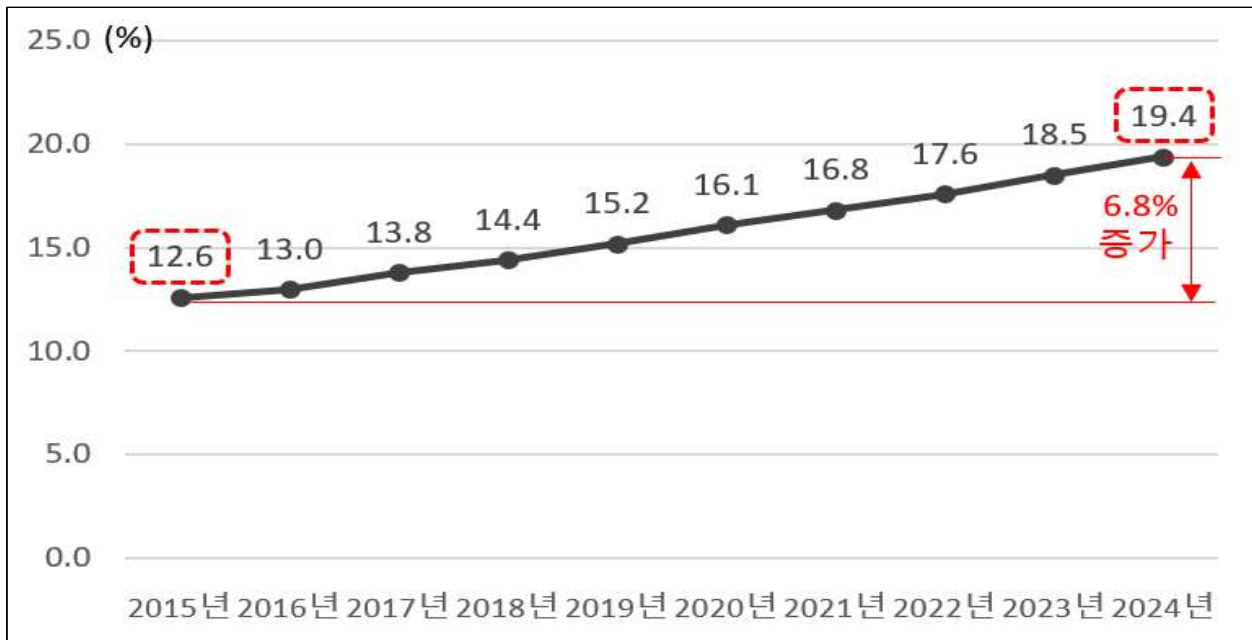
지역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서울의 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시도별 총인구 증감, 2022년 대비 2052년 장래인구추계 결과 >



- 통계청³⁾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서울의 고령인구비율⁴⁾은 19.4퍼센트로 2014년의 12.6퍼센트 대비 6.8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⁵⁾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주거와 요양시설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서울시 고령인구비율 변화, 2015년~2025년 >



3) 행정안전부 주민과,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2015년~2024년

4) 고령인구비율(%)=(65세이상인구수÷전체인구수)×100

5) 서울정책아카이브(SEOUL SOLUTION),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효과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투자, 2024.06.17.

- 이에 정부는 '25.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 회의⁶⁾에서 주거 및 출산 지원 등 저출생 대책 마련,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실버경제 육성 및 활성화 등 대응 방향 모색,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직업별 고용 등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 바 있음
- '24.9월 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⁷⁾에서 용산구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등 설치 근거 마련을 요청한 바 있으며, '25.1월 해당 안건을 시 도시계획과에 자치구 규제철폐 건의 내용으로 제출하였음
-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서울시 또한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의 지역 여건에 맞는 저출산·고령화 관련 공공지원시설 공급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됨

2) 주민 공공복리 증진 요구

- 최근 복지·교육·산업·일자리·역사·문화·환경 등 전반에 걸쳐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위기 대응 연구센터, 서울 글로벌센터, 사회적경제종합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이들 시설은 현행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⁸⁾에 따라 기반 시설 등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공익적 기능을 가진 시설로 분류

6)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2025.3.11.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11일(화) 오후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1) 저출생대책('24.6.19)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보완과제, 2) 초고령화 대응방향(II):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전략, 3)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직업별 고용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7) (보도자료) 연합뉴스, 용산구, '산모·신생아 모두 안심하는 출산친화 도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첫발, 2025.3.21.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되어 있음에 따라 현재 서울시는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하거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非)도시 계획시설⁹⁾ 등으로 공급하고 있음

- 서울시는 아현동 617-1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창업 센터’¹⁰⁾를 기반시설인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여 공급 하였음. 이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정의를 광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시설의 설치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됨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관련 법령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공익적 기능을 가진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통해 관리하기 위해, '24.7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 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붙임 1)
- 향후 더욱 고도화되고 세분화된 맞춤형 공공서비스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하거나 제공하는 공공기여 시설 중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공공지원시설 개념을 추가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빛물저장 및 이용시설·폐차장

10) 서울특별시, 마포구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0.7.9., p.1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99호)

나.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관리청)
신설	공공청사 (창업센터)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연면적 : 4,475.03	지하1층, 복합설치 (서울특별시)

“개정안 검토”

1) 저출산·고령화 지원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6호)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2항제6호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여 시설 중 공공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생략)	제20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 신설 >	6. <u>저출산·고령화대책 지원시설</u>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부터 제4조의8까지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 현행 조례 제20조제2항¹¹⁾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례로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4조의8(붙임 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을 저출산 대책 지원시설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와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설치하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 지난 '22.5월 서울시는 「서울형 키즈카페」 추진계획¹²⁾에 따라 공공 어린이놀이기구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¹³⁾하였는데, '23.11월 시설 이용 관련 설문 결과¹⁴⁾를 살펴보면, ▲이용료 부담이 낮고,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으며, ▲시설이 청결하고, ▲공공형 시설이라 믿을 수 있으며, 이용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공 어린이놀이기구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됨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2년 「서울형 키즈카페」 추진 계획, 2022.05.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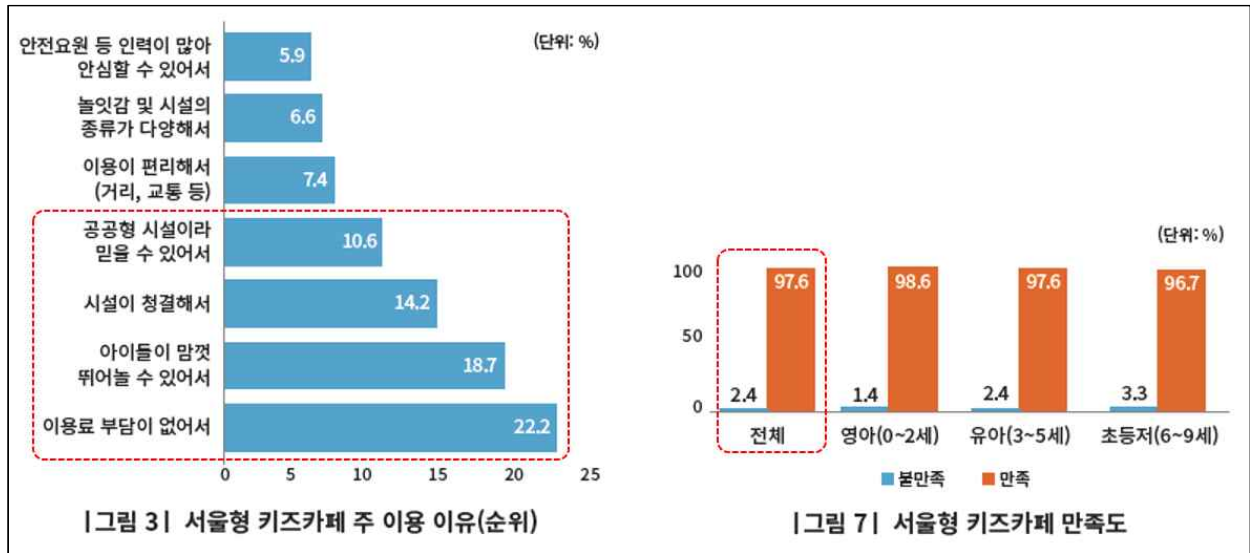
- 미세먼지 등 외부환경에 구애 없이 놀 수 있는 놀이터 확보
 -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는 연평균 기준치는 '19년 25mg/m³에서 '20년 21mg/m³로 감소했지만, 국제수준(OECD평균치 13.9mg/m³)보다 매우 높음
- 민간키즈카페 가격이 높아서 실내 놀이기구 이용 경제부담 가중
 - 아동과 보호자 포함 최소 1만5천원 이상으로, 이용에 대한 부모 비용부담이 높음
 - 경제력에 따른 놀이시간 및 질 격차 발생하고 성장 과정에서 격차 심화 우려

13)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기구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1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현황 및 정책 수요: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시

<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



※ 참조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또한, 현재 자치구가 설치·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송파구산후조리원과 서대문구산후조리원 등 2곳으로 이용금액은 민간요금(415만 원) 대비 절반 수준(23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¹⁵⁾을 얻고 있으며,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시설인 것으로 보임

< 민간-공공산후조리원 평균 이용금액 비교 >

구 분	민간산후조리원(강남구제외)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서울시(강남구제외)	전국	서울시
개소 수	451개소	116개소(101개소)	20개소	2개소*
평균 이용금액	326만원	415만원(364만원)	175만원	229.5만원

* 서울시 송파구산후조리원, 서대문구산후조리원

- ‘공공산후조리원’은 합리적인 이용금액으로 산모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 정책이 될 것이라

15) (보도자료) 더스쿠프, 하다하다 산후조리원까지 ‘부익부 빈익빈’, 2025.02.24.

보이나, 저출산 대책 지원 시설의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을 공급하기에 앞서 지역별 ‘공공산후조리원’ 수요, 자치구 예산 확보 역량 등 철저한 사전 수요 조사를 토대로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송파구는 지난 '22.7월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송파구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 중단을 검토¹⁶⁾한 바 있으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매년 적지 않은 운영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현황 (2024년 기준) >

구분	송파구산후조리원	서대문구산후조리원
개소일	2014.2.19.	2023.12.1.
정원	산모실 27실, 신생아실 30bed	모자동실 12실
인력	37명 (간호사,간호조무사,행정)	30명 (간호사(조무사),피부관리사,시설관리등)
예산	2,911,748천원	3,867,170천원
시설	지상3층 1,302.99㎡	지상4층, 지하1층 1,351.87㎡
감면대상	30%(기초수급자,다자녀) 20%(국가유공,다문화,기타)	30%(기초수급자,셋째이상) 20%(국가유공,다문화,한부모 등 기타)
운영방법	위탁(송파구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청솔트러스트)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대책 지원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 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4조¹⁷⁾에 따라 노인주거복지 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노인 관련

16) (보도자료) 머니투데이, ‘열받은’ 예비맘이 구청장 이겼다..서울 유일 공공산후조리원 살려, 2022.7.23.

17)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4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이 노
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설을 설치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의 고령인구 정책 기조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함

- 한편,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2항제6호는 저출산 대책 지원 시설의 설치 근거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6의 ‘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 같은 조례 제4조의7¹⁸⁾의 ‘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등과 같이 시설이 아닌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적용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향후 운영지침 수립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 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공공지원시설의 종류와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1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6(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본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서울시 공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 대상 시설과 감면의 범위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2) 공공지원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7호)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2항제7호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여 시설 중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개별 조례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공지원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생략) < 신 설 >	제20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생략) 7. <u>공공지원시설(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별 조례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설치되는 시설로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u>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¹⁹⁾는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을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4조제1호는 공공청사를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서울시는 그간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보훈회관, 공익활동 지원센터, 청년월세지원센터 등 공익적 목적의 시설을 설치·운영해왔으나, 해당 시설들은 「국토계획법」 제43조제1항²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²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청사’ 등의 기반시설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서울시의 공익적 목적의 공공지원시설 종류 〉

서울시가 공급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의 공공지원시설	비 고
보훈회관, 공익활동 지원센터, 청년지원센터, 주거안심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등	‘공공청사’ 분류 어려움

- 따라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2항제7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로 정의되지 않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공공지원시설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하여 주민의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다만,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지원시설의 종류가 광범위하므로 별도의 운영지침 수립을 통해 공익적 목적의 공공지원시설의 종류와 설치 운영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맞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 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빛물저장 및 이용시설·폐차장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여 시설 중 공공 어린이놀이시설, 공공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과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개별 조례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공공지원시설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2항제6호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여 시설 중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시설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의 고령인구 정책 기조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 다만,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 시설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지역별 필요 시설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운영지침 수립을 통해 공공기여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 시설의 종류와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2항제7호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는 공공 지원시설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함
- 다만, 운영지침 수립을 통해 공익적 목적의 공공지원시설의 종류와 설치 운영 방법 등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맞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도시계획시설 공공지원시설 신설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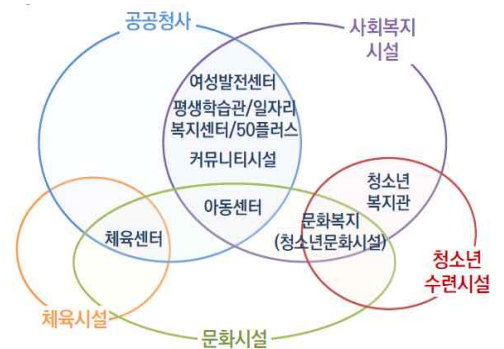
공공서비스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청사의 범위 확대 설정, 도시계획시설로서 관리 필요

□ 현 황

-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는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시설’로 규정
- 사회 다변화, 다원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증대, 다양화
 - 복지·교육·산업·일자리·역사·문화·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을 도모
 - 예시) 위기대응 연구센터, 서울글로벌센터, 연합R&D지원센터, 사회적경제종합지원센터 등

□ 문 제 점

- 사회적 요구 다양화로 기존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는 공익시설 공급 수요에 유연한 대응 곤란
 - 현재 법령으로 정의되는 공공청사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되지 않는 공공기능이 점차 증가



공공문화체육시설 내 유사 기능

□ 건의사항

- 기반시설의 종류에 공공지원시설(가칭) 신설 추가
 - 공공청사와 별도로 공공의 지원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기반시설 추가 도입
- 현행기준**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건의(안)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공공지원시설

□ **개 정(안)**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 다양한 공익시설 공급 수요를 답을 수 있는 공공지원시설(가칭)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상의 기반시설로 추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기반시설) ① (생략) 1.~3.(생략)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7.(생략)	제2조(기반시설) ①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u>공공지원시설(가칭)</u> 5.~7.(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및 양육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3. "저출산 인식개선 정책"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관·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행사, 홍보 등을 말한다.
4. "다둥이 행복카드"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5. "출생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6. "대상 아이"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출생'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된 아이 및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예정일이 기입된 출생축하용품 신청서를 제출한 모 또는 부의 아이를 말한다.
7.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거나 출산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8. "지원대상자"란 대상 아이의 보호자 중 1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9. "1인 자영업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자영업자"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 및 "플랫폼 종사자"
 - 다.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라.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마.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
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

(생략)

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① 시장은 결혼·임신·출산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조성을 위한 지원
2.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② 시장은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자동결 시술 비용
2. 정·난관 복원 시술비
3.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③ 시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모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
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의2(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시장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출생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5만원 이내로 한다.

③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④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3. 대상 아이의 보호자가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및 후견인인 경우 대상 아이의 기본증명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대상 아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⑤ 시장은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지원 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생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다만, 출산 전 신청자에 한해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 수첩 (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으로 출생등록 사항의 확인을 갈음한다.)
2.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3.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생축하용품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출생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상 수령방식에 따른다.

⑦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출생축하용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생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
2. 출생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생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

⑧ 시장은 출생축하용품 지원실적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3(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시장은 임산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4(임산부 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70만 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임산부의 경우 시장이 인정하는 증빙서류를 통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교통비를 현금,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임산부 또는 임산부의 배우자 등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신청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5(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장은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6(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7(공공예식장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본인의 결혼 준비를 위해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된 서울시 공공시설을 대관할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 대상 시설과 감면의 범위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의8(1인 자영업자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①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 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 임신부 출산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출산휴가급여 지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